

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법인 또는 기관명			
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
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신고인 제출서류	시·도지사 확인사항	
1.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	가.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.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2.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	가.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.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 력증명서(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합니다)	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	
3.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	없음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4.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 재지가 변경된 경우	없음	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
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)
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